

① 農漁村開發 및 地域經濟 育成

○ 現行: §124①

○ 民主黨: §122①②

○ 民主黨: §119①

제241條 ① 國家는 農民·漁民의 自助를 基盤으로 하는 農漁村 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樹立하며, 地域社會의 均衡있는 발전을 기한다.

제122條 ① 國家는 農民·漁民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農漁村開發과 支援등 필요한 計劃을 樹立·施行하여야 한다.

② 國家는 地域間의 均衡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育成할 義務를 진다.

제119條 ① 國家는 農業을 民族生存을 위한 基礎産業으로 保護育成하며, 農民·漁民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農·漁村 綜合開發計劃을 樹立하고, 이를 支援하며 都市와 農漁村의 均衡있는 發展을 期한다.

○ 農漁村 開發을 위하여 12家에서 보다 積極적인 施策을 추진 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地方自治의 實施基盤을 확충하기 위하여 地域經濟 育成義務를 신설하였음

○ 民主黨案 중 農業만을 基幹산업으로 보장·육성하는 것은 오늘날 急速한 工業化의 추세와 情報産業의 急성장 추세 등이 비추어 보거나 資源富國인 우리나라의 国力伸張을 위하여서도 시의적절 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

○ 都市와 農漁村의 均衡발전은 ^{民主黨案의} 地域經濟의 育成 보다

중요 의미로서 大都市와 中小都市向의 均衡발전 등 보다 시급한 문제를 도외시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.